

(붙임 2)

대표회원 선출규정(요약)

□ 대표회원 피선거권 요건

- 2020년 8월 15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대표회원을 선출하는 당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
 1. 후보자가 재임 중인 업체가 당해 시·도회 관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회원지위를 유지한 경우
 2. 후보자가 위의 업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표자로 재임한 경우
 - ※ ‘계속하여 2년 이상...’ 이란 피선거권 결격사유 기준일(8월15일)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양도양수, (출마하는)대표자의 변경, 타 시·도회 전출입 등 정회원자격의 기간단절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
 - ※ 업체 및 대표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□ 대표회원 피선거권 결격사유(판단기준일 : 2020. 8. 15부터 선출일까지)

1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피선거권 제한
4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자
5.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행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6.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정회원 본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을 신청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8. 협회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미경과 된 자(피선거권 심의 여부제도는 폐지)
9. 최근 2개연도(2018, 2019년도) 공사실적(협회에 신고, 확정실적 기준)의 연평균액이 3억원에 미달하는 자
10. 이해상충 단체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경우에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며, 2020. 8. 14까지 타 건설관련 사업자 단체*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사임한 경우 피선거권 보유

* 대한건설협회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, 대한건설기계협회
서울굴삭기연합회,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,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

11. 회비를 체납하고 있는 자
12. 시공능력평가자료를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□ 협회 정관 : 중앙회 홈페이지(www.kosca.or.kr) 확인가능

[중앙회 홈페이지 → 협회안내 → 협회소개 → 정관]